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직 관련 예산관리 및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증원, 1명(6급 1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획재정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 과와 경제구조개혁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

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산총괄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 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⑳ 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 수산업 및 해양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

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2.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편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말한다)·소방청·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법무부·법제처·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제외한다)·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3. 국가정보원·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3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변경관리 및 집행의 관리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
4.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말한다)·소방청·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법사·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종합·조정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개선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5.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연금보건의료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5.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조정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조정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농업·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6. 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조정

6.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조정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7.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7. 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7.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제외한다)·외교부·통일부 소관 기
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7.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종합 및 집행의 관리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
과관리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
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조정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
제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
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
관·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조세총괄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
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
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

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관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20항(중전의 제18항) 중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산업관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 제2호, 제2호, 제3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 제5호,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율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긴급관세·조정관세·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의2.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5.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7.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통관·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2. 다자·양자간 관세 협의·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3. 한·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제정책국장 및 민생경제정책관은 각각”을 “경제정책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제정책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민생경제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 제4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책조정국장 및 정책조정기획관은 각각”을 “정책조정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책조정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기획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조정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처별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대한 지원

제13조의2제4항제5호 중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를 “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임금 및 노사관계”를 “노사관계”로 한다.

5.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6.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조정

제13조의3제1항 중 “보하되,”를 “보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고국장 및 국유재산심의관은 각각”을 “국고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고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유재산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혁신국장 및 재정기획심의관은 각각”을 “재정혁신

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정혁신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기획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정기획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재정관리국장 및 재정성과심의관은 각각”을 “재정관리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정관리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정성과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11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혁신심의관”을 “공공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정책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 제4호·제5호·제11호·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경영과장”을 “공공정책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운영
4.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기능·인력·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 계획의 수립

10. 공공기관의 정원 및 직급조정
 11. 공공기관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의 관리
 12.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점검·지원 및 효과 분석
 13.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5.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분석과장”을 “공공제도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협 의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보수체계 분석 및 평가
 9. 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
 10.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항
 1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한 사항
 1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한 사항
 13. 연구개발목적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역할조정에 관련한 사항
- 제16조제6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재경영과장”을 “재무경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
 3. 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및 평가
 4. 공공기관 재무위험 증가에 대한 예측 및 대비에 관련한 사항
 5.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9. 매각시기·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10.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1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범위·절차·내용에 관련한 사항

12. 공공기관 출자 사전협의와 관련한 사항

13.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제1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윤리경영과장”을 “평가분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개선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보급

9.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2.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13.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분석

1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발간

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

열 개발·운영

11.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의 특별승진제도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인사교류·인사개방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노사 협력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⑩ 윤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고등학교 졸업출신자·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10. 여성·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1.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2.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3.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제도 정착과 관련한 사항
 14. 윤리경영·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컨설팅 활동 등
- 제16조제11항(종전의 제9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및 방만경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정착을 위한 지원
 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지원
- 제16조제12항(종전의 제10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안전등급제, 안전경영책임보고, 사고책임과 관련된 사항

16. 공공기관 경영관련 송무 대응 지원

제17조제1항 중 “국제금융국장 및 국제금융심의관은 각각”을 “국제금융 국장은”으로,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금융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3항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제6항(중전의 제4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제17조제8항(중전의 제7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금융국제화”를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로 한다.

7. 한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중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11.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2호, 제13호 및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국 경제 동향 파악·분석 및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1.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정책협의 및 조정

14. 해외투자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16.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분석 및 관리

17.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15. 해외투자 법령 입안·해석 및 협의

18.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분석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경험증진자금(EDPF)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관리

제1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15호) 중 “중남미지역”을 “아프리카지역”으로, “관련된”을 “관련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20호) 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 등 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4.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조정

2.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9.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등 중앙아시아 지역·몽골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제18조제4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19호) 중 “아시아유럽정상회”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북미 지역과의 무역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등 다자간”을 “다자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

11.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12.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등 중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제18조제5항제13호(중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을 “경제장관회의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7호) 중 “거대경제권을”을 “북미를”로, “자유무역협정”을 “무역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4.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7. 오세아니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8.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

제18조제6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6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1호) 중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10호) 중 “제8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자유

무역협정”을 “무역협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기획·입안·운영”을 “기획·입안·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6호 중 “외국환관리지침”을 “외국환거래지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대북지식협력”을 “통일기반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두만강개발계획”을 “광역두만개발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남북경제”를 “북한경제”로 한다.

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6.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운영·관리 및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시행
7.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조정
8.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전시·교육·국제협력 등 사업 기획·운영 및 관리
9.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활용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기획·발굴 및 지원
10.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11. 인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12.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

의 종합·조정

제18조의2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1,050”을 “1,05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043”을 “1,045”로 하며, 일반직 계 “1,033”을 “1,035”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6”을 “87”로 하며, 행정사무관 “401”을 “402”로 하고, 행정주사 “106”을 “107”로 하며, 행정서기 “49”를 “48”로 한다.별표 4의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9월 30일까지”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0년 7월 31일”을 “2021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기획재정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2)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1년 2월 28일까지
3)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4)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5)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6)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1년 2월 28일까지
7)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	6명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u><신 설></u>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신 설></u>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u><신 설></u>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② ~ ⑥ (생략) 제10조(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신설>	0조의2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0조(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산총괄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
---	--	---	---

② ~ ⑬ (생 략) ⑭ <u>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 수산업 및 해양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2. <u>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u> 3. <u>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4. <u>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u> 5. <u>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u>	<u>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⑧ ~ ⑱ (현행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u><삭 제></u>		6. <u>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농업·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u> ⑮ <u>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2. <u>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u> 3.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3의2.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변경관리 및 집행의 관리</u> 4. <u>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5. <u>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u>	<u><삭 제></u>
---	--	--	--	---------------------------

6.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종합 및 집행의 관리

⑩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 방향 수립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

<삭 제>

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7.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⑪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

<삭 제>

<u>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4. <u>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u> 5. <u>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u> ⑱ <u>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2. <u>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u> 3. <u>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4. <u>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u>	
---	--

<삭 제>

<u>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u> 5. <u>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u> ⑲ <u>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2. <u>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u> 3. <u>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말한다)·소방청·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4. <u>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말한다)·소방청·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u> 5. <u>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u>	
---	--

<삭 제>

<u>관련 예산의 종합·조정</u> 6. <u>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u> <u>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u> <u>리</u> 7. <u>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u> <u>설정</u> 8. <u>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재난</u> <u>·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u> <u>성과관리</u> ㉔ <u>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u> <u>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u> <u>장기 추진방향 수립</u> 2. <u>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u> <u>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u> <u>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u> 3. <u>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u>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u> <u>·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u> <u>실·법무부·법제처·경찰청</u> <u>·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u> <u>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u> <u>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u> <u>관리</u> 4. <u>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법사</u>	㉔ <u>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u> <u>항을 분장한다.</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u> <u>임업 수산업 및 해양분야 주</u> <u>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u> <u>향 수립</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u> <u>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u> <u>장기 추진방향 수립</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정보통</u> <u>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u> <u>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u> <u>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u> <u>방향 수립</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u> <u>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u> <u>기 추진방향 수립</u>		<u>· 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u> <u>과관리</u> 5. <u>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u> <u>리기금 관련 협의·조정</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u> <u>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u> <u>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u> <u>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u> <u>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u> <u>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u> <u>장기 추진방향 수립</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u> <u>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u> <u>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1. <u>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u> <u>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u> <u>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u> <u>총괄·조정</u> 1. <u>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u> <u>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u> <u>추진방향 수립</u> 1. <u>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u> <u>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u> <u>추진방향 수립</u> 2. <u>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u> <u>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 시</u> <u>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u> <u>전망 및 기획·조정</u>
---	--	--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2.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2.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

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
 를 말한다)·소방청·해양경
 찰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
 실·법무부·법제처·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
 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외교부·통일부·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
 를 제외한다)·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
 성 및 집행의 관리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관리

3. 국가정보원·국방부 및 병무
 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
 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
 를 제외한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조정·변경관
 리 및 집행의 관리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
 산의 편성·종합

4.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
 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
 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
 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
 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
 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
·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말한다)·소방청·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법사·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종합·조정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개선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

· 조정
 5.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연금보건의료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5.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조정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방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조정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농업
·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
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6.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
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
리

6.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6. 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
리

6.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6.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조정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7.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
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안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
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
리

7. 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7.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
를 제외한다)·외교부·통일
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
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
리 및 결산

7.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
성·종합 및 집행의 관리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정보
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⑳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를 제외한다)·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조정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6.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7.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분야
를 제외한다)·외교부·통일
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
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통일
·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
에 대한 성과관리
 9.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㉔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
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
성지침의 작성·통보
 3.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의 선정 및 관리
 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의 종합·조정
 5.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삭 제>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
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
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
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조정
- ㉕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
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
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국가정보원·국방부 및 병무

<삭 제>

<u>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4. <u>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u> 5. <u>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u> 6. <u>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조정</u> 7. <u>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u> ②④ <u>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u> 2. <u>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u> 3. <u>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u> 4. <u>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개선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u> 5. <u>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조정</u>	<삭 제>		6. <u>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u> 제11조(세제실) ① <u>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세제실) ① <u>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u>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③ <u>조세총괄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④ <u>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u>
--	--------------------	--	---	---

<신 설> <신 설> ② ~ ⑭ (생 략) ⑮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율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2. 긴급관세·조정관세·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3의2.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관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⑱ (현행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삭 제>		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⑰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	---	--	--	--------------------

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5.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6.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7.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8.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통관·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2. 다자·양자간 관세 협의·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3. 한·미행정협정 중 기획재

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⑮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1. (생략)

<신 설>

<신 설>

2. (생략)

<신 설>

<신 설>

3. (생략)

⑯ 산업관세과장-----
-----.

1. 관세율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긴급관세·조정관세·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u>
	<u>· 입안 및 운용</u>
<u><신 설></u>	<u>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u>
	<u>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u>
<u><신 설></u>	<u>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u>
	<u>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u>
	<u>입과 운용</u>
<u>4. (생 략)</u>	<u>4.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u>
	<u>류제도 및 관세·통계통합품</u>
	<u>목분류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입안</u>
	<u>및 운용</u>
<u>5. (생 략)</u>	<u>5.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u>
	<u>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u>
	<u>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에</u>
	<u>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u>
	<u>한 사항</u>
<u><신 설></u>	<u>6.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u>
	<u>기획·입안 및 운용</u>
<u><신 설></u>	<u>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u>
	<u>점검·분석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u>
	<u>입안 및 운용</u>
<u><신 설></u>	<u>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u>

	<u>에 관한 사항</u>
	<u>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u><신 설></u>	<u>8.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u>
	<u>조사 및 분석</u>
<u><신 설></u>	<u>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u>
	<u>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u>
	<u>괄</u>
<u><신 설></u>	<u>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u>
	<u>된 원산지·통관·무역구제</u>
	<u>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u>
	<u>관한 사항</u>
<u><신 설></u>	<u>1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u>
	<u>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u>
	<u>수립·조정 및 교섭에 관한</u>
	<u>사항</u>
<u><신 설></u>	<u>12. 다자·양자간 관세 협의·</u>
	<u>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u>
	<u>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u>
<u><신 설></u>	<u>13. 한·미행정협정 중 기획재</u>
	<u>정부 소관사항의 총괄</u>
<u><신 설></u>	<u>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u>
	<u>자·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u>
	<u>관한 사항</u>
	<u>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u>
	<u>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제12조(경제정책국) ① <u>경제정책국장 및 민생경제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제12조(경제정책국) ① <u>경제정책국장은</u> ----- ----- -----.
<u><신 설></u>	② <u>경제정책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 ④ (생 략)	③ <u>민생경제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u>
⑥ ~ ⑨ (생 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3조(정책조정국) ① <u>정책조정국장 및 정책조정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3조(정책조정국) ① <u>정책조정국장은</u> ----- ----- -----.
	② <u>정책조정국장 및에 두는 보</u>

<u><신 설></u>	좌기관은 정책조정기획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⑧ (생 략)	③ <u>정책조정기획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u>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u>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④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②·③ (생 략)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 ----- ----- -----.
④ <u>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④ ----- -----.
4. <u>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u>	④ ----- -----.
5. <u>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u>	1. ~ 3. (현행과 같음)
	4. <u>부처별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대한 지원</u>
	5. <u>임금</u> ----- -----

조정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1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⑤ 일자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4. 부처별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대한 지원	<삭 제>	⑤ 협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신 설>	5.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5.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	4. 노사관계 -----	10.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 설>	6.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조정	11. ~ 21. (생 략)	11. ~ 21.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14조(국고국) ① 국고국장 및 국유재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국고국) ① 국고국장은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고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유재산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3조의3(장기전략국) ① 장기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3조의3(장기전략국) ① -----.	<신 설>	③ 국유재산심의관은 「기획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u>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u>
② ~ ⑧ (생략)	④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5조(재정혁신국) ① <u>재정혁신국장 및 재정기획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신설>	제15조(재정혁신국) ① <u>재정혁신국장은</u> ----- ----- -----.
	② <u>재정혁신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기획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신설>	③ <u>재정기획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u>
② ~ ⑧ (생략)	④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u>재정관</u>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u>재정관</u>

<u>리국장 및 재정성과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신설>	<u>리국장은</u> ----- ----- ----- -----.
	② <u>재정관리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신설>	③ <u>재정성과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11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u>
② ~ ④ (생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⑨ (생략)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6조(공공정책국) ① <u>공공정책국장 및 공공혁신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신설>	제16조(공공정책국) ① <u>공공정책국장</u>----- ----- -----.
	② <u>공공정책국장 및에 두는 보</u>

② (생략)

③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운영
4.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 계획의 수립 및 홍보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

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4호·제5호·제11호·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을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 계획의 수립
 10.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점검·지원 및 효과 분석
 11.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 계획의 수립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3.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14. 그 밖에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

<삭 제>

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협의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삭 제 8. 삭 제 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⑤ 재무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 3. 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	--

⑤ 공공정책총괄과장----- -----.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

및 평가 4.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8. 매각시기·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9.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신 설> <신 설>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운영 4.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 계획의 수립 및 홍보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기능·인력·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 계획의 수립 10. 공공기관의 정원 및 직급조정 11. 공공기관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의 관리
--	---

<신 설>	12. <u>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점검·지원 및 효과 분석</u>	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검토·협의
<신 설>	13. <u>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 계획의 수립</u>	4.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u>	4. <u>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u>
<신 설>	14.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5.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u>	5. <u>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u>
<신 설>	15. <u>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u>	6. <u>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u>	6. <u>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u>
⑥ <u>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⑥ <u>공공제도기획과장</u>-----	7. <u>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개선</u>	7. <u>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u>
1. <u>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u>	1. <u>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u>	8. <u>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보급</u>	8. <u>공공기관 보수체계 분석 및 평가</u>
2. <u>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u>	2. <u>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u>	9. <u>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u>	9. <u>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u>
3.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기준·방법 및 기관</u>	3. <u>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u>	<신 설>	10. <u>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항</u>
		<신 설>	11. <u>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한 사항</u>
		12. <u>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u>	12. <u>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한 사항</u>
		13. <u>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u>	13. <u>연구개발목적공공기관의 기</u>

<u>외사례 조사·분석</u> 15.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발간</u> ⑦ <u>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u> 2.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배 구조에 관한 사항</u> 3.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u> 4.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u> 5. <u>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u> 6. <u>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u> 7. <u>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u> 8.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u>	<u>능조정 및 역할조정에 관련한 사항</u> <삭 제> ⑦ <u>재무경영과장-----</u> -----. 1. <u>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u> 2. <u>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u> 3. <u>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및 평가</u> 4. <u>공공기관 재무위험 증가에 대한 예측 및 대비에 관련한 사항</u> 5. <u>공공기관 사업의 사전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u> 6. <u>공공기관의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u> 7. <u>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8. <u>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u>	<u>임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9.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u> 10.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운영</u> 11. <u>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⑧ <u>윤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u> 2. <u>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u>	<u>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u> 9. <u>매각시기·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u> 10. <u>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u> 11. <u>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범위·절차·내용에 관련한 사항</u> 12. <u>공공기관 출자 사전협의와 관련한 사항</u> 13. <u>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점검 및 정비</u> ⑧ <u>평가분석과장-----</u> -----. 1. <u>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u> 2. <u>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u>
---	--	--	---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기준·방법 및 기관 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전환 제도 관리 및 지원	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4.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 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 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고등 학교 졸업 출신자·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 리 및 지원	<삭 제>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 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 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 원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 성·운영	11. 여성·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삭 제>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 라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 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 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1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 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2.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경 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 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 개선	13.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3.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 외사례 조사·분석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 템 정비 점검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보 급	14.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 원	<삭 제>
9.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9.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	<신 설>	1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발간
		<신 설>	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 신
		<신 설>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이사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신 설>

- 및 지원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운영
 11.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의 특별승진제도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인사교류·인사 개방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노사 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⑩ 윤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고등학 교 졸업 출신자·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10. 여성·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1.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

⑨ 공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공공기관 노사 협력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신 설>

3.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2.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3.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제도 정착과 관련한 사항
14. 윤리경영·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컨설팅 활동 등
- ⑪ -----
-----.
1. (현행과 같음)
- <삭 제>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및 방 만경영에 관한 사항
2. ~ 11. (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 확대, 정착을 위한 지원
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지원

⑩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7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장 및 국제금융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⑫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안전등급제, 안전경영책임 보고, 사고책임과 관련된 사항

16. 공공기관 경영관련 송무 대응 지원

제17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장은 -----

-----.

② 국제금융국장 및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기획재

②·③ (생략)

④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생략)

⑤ (생략)

⑦ 금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설>

7·8. (생략)

9.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

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3항제23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
-----.

1. ~ 6. (현행과 같음)

7. 한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중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10.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 --

11.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

10. · 11. (생략)	12. · 13.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8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8조(대외경제국) ①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미국, 중국, 유럽연합 및 일본 등 거대경제권(이하 이 조에서 “거대경제권”이라 한다)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과 경제 동향 파악·분석	4. 주요국 경제 동향 파악·분석 및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5. 삭제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연불수출, 그 밖에 수출입금융 지원·관리	11.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정책협의 및 조정
12.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 정책협의 및 관리	<삭제>
<신설>	14. 해외투자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13. · 14. (생략)	12. · 13.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15.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관련 전략의 수립	15. 해외투자 법령 입안·해석 및 협의
<신설>	16.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분석 및 관리
<신설>	17.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에의 해외투자지원
<신설>	18.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분석
<신설>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경험증진자금(EDPF)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관리
16. (생략)	20.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해외투자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삭제>
3. 해외투자 법령 입안·해석 및 협의	<삭제>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관리 및 분석	4.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조정
5.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에의 해외투자지원	<삭제>
6. (생략)	1. (현행 제6호와 같음)

<u><신 설></u> 8. <u>환경관련 국제협약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u> 9. <u>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u> 10. <u>한·인도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11. (생 략) 12. <u>동북아경제공동체와의 경제 협력</u> 13. <u>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정책 협의</u> 14. <u>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 및 금융협력업무</u> 15. <u>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u> <u><신 설></u>	2. <u>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u><삭 제></u> 9. <u>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등 중앙아시아 지역·몽골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u><삭 제></u> 3. (현행 제11호와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5. <u>아프리카지역</u>----- -- <u>관련한</u> ----- 6. <u>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 등 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u>		16. <u>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17. <u>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u> 18. <u>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u> 19. <u>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 개최 총괄</u> 20. <u>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u> 21. (생 략) ⑤ <u>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 략) 4. <u>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u> 5. <u>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u>	<u>책의 종합·조정</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7. <u>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u> --- 8. <u>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u> --- 10. (현행 제21호와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u>북미 지역과의 무역협정</u> --- ----- ----- 5. <u>다자간</u> ----- ----- -----
--	---	--	---	--

정책 협의 6. ~ 9. (생략) 10. <u>세계무역기구 관련 경제정책 업무</u> <신설> <신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⑥ 통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한·중 <u>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u> 3. <u>한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중 고위급 경제 및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u>	----- 6. ~ 9. (현행과 같음) 10. <u>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u> 11. <u>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12. <u>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등 중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13. ----- 제12호----- ----- ⑥ ----- -----. 1. (현행과 같음) 2. ----- <u>경제장관회의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u> ----- 3. <u>일본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4. <u>일본과의 경제협력</u> 5. <u>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u> 6. <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동향 및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u> 7. <u>거대경제권을 제외한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u> 8. <u>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종합·조정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평가</u> 9. <u>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종합·조정을 위한 양자간 협정 및 다자간 협정의 점검 및 분석</u> 10. <u>제8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u> <신설> 11.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⑦ 삭제	4. <u>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삭제> <삭제> 5. <u>북미를</u> ----- -- <u>무역협정</u> ----- -- 8. <u>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u> <삭제> 6. <u>무역협정</u> ----- -- 7. <u>오세아니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9. ----- 제8호----- ----- -----
--	--	--	---

⑧ 경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u>기획·입안·운영</u> 및 사후 관리 5. 대외 공적채권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응 6.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권 취득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기획·입안·운영</u> ----- ----- 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u>협의를 조정</u> 6.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u>기획·운영·관리</u> 및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시행 7.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의 <u>협의를 조정</u> 8.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u>전시·교육·국제협력 등 사업 기획·운영 및 관리</u> 9.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활용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u>기획·발굴 및 지원</u> 10. 동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u>종합·조정</u> 11. 인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	<신 설> ⑨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대북투자 등에 관한 <u>외국환 관리지침</u>에 관한 사항 7. ~ 14. (생 략) 15. <u>대북지식협력</u>에 관한 사업의 <u>기획·수립 및 집행</u> 16. 삭제 17. (생 략) 18. <u>두만강개발계획</u>과 관련한 정책의 <u>기획 및 종합·조정</u> 19.·20. (생 략) 21. <u>남북경제</u>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대책수립 22. ~ 25. (생 략)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u> 12.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u>종합·조정</u> ⑨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외국환거래지침</u>----- 7. ~ 14. (현행과 같음) 15. <u>통일기반조성</u>----- ----- 17. (현행과 같음) 18. <u>광역두만강개발계획</u>----- ----- 19.·20. (현행과 같음) 21. <u>북한경제</u> ----- ----- 22. ~ 2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삭제>
7.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삭제>
8. ~ 11. (생략)	3. ~ 6.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2와 같으며, 별표 1의 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7퍼센트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049	1,051	+2
1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042	1,044	+2
일반직 계	1,032	1,034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6	87	+1
행정사무관	383	384	+1
행정주사	125	126	+1
행정서기	49	48	-1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050</u>	<u>1,052</u>	+2
1	·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043</u>	<u>1,045</u>	+2
·	·	·	
·	·	·	
일반직 계	<u>1,033</u>	<u>1,035</u>	+2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86</u>	<u>87</u>	+1
·	·	·	
행정사무관	<u>401</u>	<u>402</u>	+1
·	·	·	
행정주사	<u>106</u>	<u>107</u>	+1
·	·	·	
·	·	·	
행정서기	<u>49</u>	<u>48</u>	-1
·	·	·	